



Monitoring Reports
모니터링 리포트
Vol.03 _ 2011년 7월/9월



장애 체험? 장애인 *코스튬 플레이!!

전 세계에서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장애 체험 행사'. 각종 선거 때나 장애인의 날, 흰 지팡이의 날 등 때만 되면 고위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이런 행사에 참여한다. 잠시 짬을 내어 "장애인 흉내내기" 이벤트에 참여하기보다는 장애인 당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것은 어떨지...

* 코스튬 플레이(costume play)란? 만화나 게임의 주인공을 모방하는 취미 문화.

CONTENTS

02	장애와 이미지	장애체험 "코스튬 플레이!!"
04	편집자 편지	사회적 인식의 저편
05	이 사람의 향기	노안호 과장(경기도청)
11	포커스 I - 의정	의회 장애인 지칭용어
17	포커스 II - 조례	지역 장애인차별조항 개정 현황
24	포커스 III - 예산	지방자치단체 생활시설 예산
30	포커스 IV - 화장실	경부고속도로 휴게소 장애인 화장실 모니터링
40	서평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42	Cinema	배트맨 리턴즈
44	장애 이슈	장애계 소식
47	홍보 - 웹와치	

사회적 인식의 저편

덥고 습한 여름을 보내고 이제 성큼 다가온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니터링 리포트>는 사정상 7월과 9월호를 한꺼번에 묶는 합본 형태가 되었습니다. 오래 기다리다 나온 소식지이니 만큼 좀 더 알찬 내용을 채우려고 노력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발간하는 <모니터링 리포트>는 이제 본격적으로 장애인 문제에 대해 발언을 해볼까 합니다. 물론 저희 모니터링센터가 장애인 정책을 다루는 곳이니만큼 정책적인 문제를 격양되지 않는 차분한 목소리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창간호와 제 2호처럼 변함없이 알차고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호의 포커스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을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왜곡된 인식이 가장 민감하게 포착되는 지점을 짚어보았습니다. 먼저 수년간 각급 지방의회 장애인 관련 발언을 접하면서 만나게 되는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수많은 장애인 관련 용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치법규는 장애인차별금법과 상충되는 조항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지역 장애인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장애인 차별 조례 현황을 살펴보고, 울산과 경기 지역의 조례 제·개정 연대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생활시설 예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시설 위주의 정책을 버리고 자립생활 정책을 중심에 세웠다고 홍보하지만 여전히 지역에서는 생활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지자체 예산을 중심으로 분석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접근성 모니터링은,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잘못 알려진 '다목적 화장실'의 운영 실태를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눈에 띄는 것은 경기도청 장애인 복지과에서 근무하던 노완호 과장의 인터뷰입니다. 지난 2년간 경기도 장애인 복지의 책임자로서 느꼈던 기대와 한계, 그리고 경기도 장애인 복지 정책의 전망 등 허심탄회한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또한 영화 <배트맨 리턴즈> 안에 녹아있는 장애 이미지의 슬픈 현실 등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여기에 실린 모든 정보 하나하나가 그 누구에게든 의미 있는 꼭지로 기억 속에 남기를 바라며 이 편지를 세상에 띄워 보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09.27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윤 삼 호

노완호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인터뷰, 정리, 강인영 / 센터 연구원

2년간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으로 재직하다 최근 복지정책과로 자리를 옮긴 노완호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을 만났다. 노과장은 2009년부터 “장애인 차별규정 자치법규 정비 계획”을 도내 하달하여 지자체의 장애차별인조항 개정에 선도적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 편집자 주

도내 자치법규의 장애 차별적 조항 개정은 어떤 계기로 시작되었나?

지난 2009년 사단법인 경기도 장애인 인권포럼은 「경기도 장애인복지기금」지원을 받아 경기도청과 관내 인구 50만 이상인 8개 시의 자치법규 4,102개를 모니터링 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에 저촉되는 조례와 규칙 54건을 찾아냈다. 이 일을 계기로 자치법규에서 장애 차별적인 조항들을 찾아 개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 사업(차별규정 정비계획)의 타당성과 의의는 무엇인가?

도내 자치법규가 장차법에 저촉되지 않게 선제적으로 조치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행정 사례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아울러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아직도 가야할 길이 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전국으로 자치법규 개정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 같아 우리 경기도가 보람된 일을 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경기 장애인 인권포럼과 한국 장애인 인권포럼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경기도의 자치법규 장애 차별적 조항 개정 추진이 경기도 스스로가 제안하여 이루어졌다. 이것은 어찌 보면 경기도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데 정비계획 자체에 부담감은 없었나?

시대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행정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 2008년 4월 장차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차별적인 규정들을 단지, 잘못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정비하지 못한다면 이는 도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바른 행정에 어긋나는 일일 것이다.

현재 경기도 본청 및 31개 기초단체의 차별조항 현황과 개정실적은 어떤가?

도 및 31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11,626개로 나타났다. 그 중 차별적 조항으로 분류된 자치법규는 198개로 밝혀졌다. 그동안 도청과 성남시 부천시 등 9개 시·군에서 조례, 규칙 등 자치 법규 25개를 정비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노완호과장은 장애차별인적 조항 개정의 토대를 만든 장본인으로 이제 복지정책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차별조항 정비사업의 향후 진행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이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경기도가 지난해 2월부터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는 장애인차별규정 자치법규 정비 계획은 도의 주요한 장애인복지 시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별한 예산 없이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권익 증진을 크게 끌어 올릴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당 자치법규가 모두 개정될 때까지 정비 작업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기관과 장애인 당사자 여러분께서도 완벽한 정비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발전적인 의견을 보내주셔야 한다고 본다. 때로는 감시자로서, 때로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담당해 주셔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간 경기도 장애복지 정책을 담당한 수장으로서 과거를 회상해보면 감회가 없을 수 없겠다. 경기도 장애복지정책의 자랑할 만한 점은 무엇인가?

먼저, 2004년 4월부터 시작한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운영이다.

보조기구에 대한 상담·평가·정보 안내,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으로 장애인들의 사회·경제활동의 편의 증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국내 보조기구 관련 산업 육성으로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이루어진 사업이다. 이제는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등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보건복지부 보조기구 사례관리 사업의 효시가 되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 관련 법령의 제정이 늦어지고 있어 안타까운데 하루빨리 이루어져 보조기구 생산과 보급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애아 재활치료도 자랑할 만한 분야다. 2000년도에 경기도 재활협회 제안으로 시작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를 현재 도내 20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2009년 2월부터 중앙정부가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을 시작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2006년도에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이 겪고 있는 갈등의 완화와 욕구 해결 등 가족기능 강화에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뜻 깊은 사업이다. 지금은 경기도가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금년에 들어 경기도 의정부시에 새롭게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북부지역 장애인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했다.

장애인복지과에 근무하면서 많은 장애인단체와 장애당사자를 만났을 텐데, 장애계에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장애계가 좀 더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그동안 도내 장애인 단체에서 도정의 장애인 복지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아쉬웠던 부분은 없다.

많은 요구가 있었고, 필요했던 사업들이었지만 재정이 어려워 충분히 밑받침을 해드리지 못해 아쉽다.

장애인 복지가 가야할 길은 아직도 멀다. 장애인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회원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단체 간 서로 존중하며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우리 사회의 장애인 복지는 한층 원숙한 단계로 발전해 나아갈 것으로 믿는다.

최근 정치권의 화두는 역시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도내의 장애인복지정책의 역점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일자리를 마련하는 일이다. 특히 지적·자폐성 등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경기도에서 공공도서관 사서 보조원으로 지적·자폐성 장애아를 배치하고 있는데 반응이 아주 좋다. 또한 시·군청, 보건소, 도서관 등에 장애인이 근무하는 카페 설치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영농활동, 세차, 어린이집 교사 보조, 재활용품 선별 등도 유망한 분야다.

둘째, 낮 동안 돌보는 주간 보호시설을 대폭 늘려야 필요가 있다. 재정만 허락한다면 최소한 읍면동별로 1개소씩은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수원 영통구나 용인 수지구에는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이 하나도 없다. 도내에 67개소가 있는데 경기도의 넓이를 생각하면 장애인 보호자입장에서 도내에 주간 보호시설이 있다고 인식하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셋째, 공공·민간 분야 편의시설 정비, 특별교통수단 등 이동권 확충 과제가 시급하고, 문해와 독서교육 등 평생 교육지원 확대도 꼭 이루어야 할 역점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문화 예술 분야의 창작이나 관람 지원 분야도 관심이 필요하다.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반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는가? 또 돌아가더라도 반드시 수행해야하는 주요 사업은 무엇인가?

필요 없는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본다. 다만,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사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수주작처(隨主作處)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주인의식을 갖고 사물을 바라본다면 실효성이 미흡한 사업을 그대로 방치하는 무책임한 사례는 없을 것이다.

외부기관으로부터 타 지자체의 정책 수행실적과 도내정책이 비교 평가 받는 일은 일선 담당 공무원들에게 매우 곤혹스러운 경험일 것이다. 특히 그 평가지표의 타당도가 의심스럽다면 오히려 공무원들의 업무 의욕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외부기관들의 장애인복지정책 평가지표들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보다 더 강조되고 부각돼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해마다 장애인 인권·복지 수준 평가에서 경기도가 대체로 하위 그룹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교육 분야 평가의 경우 경기도가 15위, 서울이 16위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본다. 과연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볼 수 있는가? 결국은 지표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16개 시·도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수행 실적을 수혜 대상에 대한 고려 없이 전체 장애인구로 나누어 산출하는 방식은 좀 전향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특히 장애인 고용율을 중앙정부가 보조한 복지일자리와 행정도우미 참여 인원만 갖고 산출한 것은 아주 부적절한 지표였다고 본다. 중앙정부가 사업량을 시·도에 배정



할 때, 장애 인구수를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 같다. 또한, 검증이 미흡하다는 것도 큰 문제다. 시·도가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같은지 여부는 오로지 입력하는 실무자의 양심에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애인복지정책 수행에 있어 경기도가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조건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개선방안은?

경기도 장애인구가 50만 명으로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데 담당 공무원은 인구에 비례하여 배치하지 못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서울시와 인접해서 거주하기 때문에 서로 비교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의 재정과 담당공무원의 배치가 경기도에 비해 월등히 많기 때문에 도내 장애인들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를 경기도에서는 재정이나 인력만으로 풀어 나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실효성의 증대에서 해소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다. 무한돌봄센터가 그 사례가 될 수 있는데 도와 시·군에 1개소씩 설치하여 사례관리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한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규모로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모니터링 대상 사업을 더 확대해 주길 바란다. 지금도 외연을 넓히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보지만 중앙 또는 지방이 시행하고 있는 여러 시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며, 문제가 무엇인지, 클라이언트의 생각은 어떤지 보다 다양하게 분석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해 줄 것을 끊임없이 제안하면 좋겠다.

지방의회 회의록에 나타난 장애인 관련 용어

글. 강인영 / 센터 연구원

- 지방의회! 장애인, 뭐라고 부를까?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는 지난 5년 간 국회모니터링을 시작으로 지방의회 모니터 결과를 매해 발표하였다. 의정활동 모니터링 대상인 회의록은 지자체 정책과 사업, 예산 및 조례 제정과정을 기록한 것이지만, 회의록은 244개 지자체 의회 의원 및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감수성이나 장애인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 및 수준을 보여주기도 한다.

특히 수집된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의원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장애인을 어떻게 지칭하는지 글자 그대로 나타나있다. 회의록에 나타난 장애인 지칭 용어는 ‘장애인’, ‘장애자’, ‘장애우’가 있으며, 200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지적장애’로 명칭이 변경된 ‘정신지체’를 사용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또한 비장애인을 지칭할 때는 ‘일반인’, ‘정상인’, ‘비장애자인’과 같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낙인감을 줄 수 있는 용어도 많이 사용되었다.

지난 민선4기(2006.07~2010.06) 광역의회에 나타난 장애인관련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지칭 용어

〈표1〉 민선4기 광역의회 장애인, 장애우 발언 건수

용어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합계
장애인	의원	32(1)	25	33(1)	18	108
	집행부	12	7	14	11	44
	합계	44	32	47	29	152
장애우	의원	34(1)	23(1)	36(2)	29	122
	집행부	12	6(1)	10	10	38
	합계	46	29	46	39	160

*()는 장애인 지칭용어 개선에 관한 발언

의원이 장애인 용어를 사용한 건수는 1차년도 32건, 2차년도 25건, 3차년도와 4차년도 각각 33건과 18건으로 나타났다. 집행부에서는 1차년도 12건, 2차년도 7건, 3차년도와 4차년도 각각 14건, 11건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우로 지칭한 의원은 1차년도 34건, 2차년도 23건, 3차년도와 4차년도 각각 36건, 29건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행부는 1차년에 12건, 2차년도 6건, 3차년도와 4차년도에 각각 10건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나 ‘장애우’ 비슷한 비율로 지칭하였고, 집행부보다는 의원들의 발언에서 더 많이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장애인나 장애우 외에도 정신박약아의 줄임말인 ‘정박아’, ‘지체부자유자’ 등 장애인 당사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신장장애인협회는 신규가 아니라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위한 사무실 임대라든지 이런 것을 신규로 등록하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내년 예산이 좀……. 중문의 시각장애인협회하고 같이 맞물린 예산입니다마는 내년에 계상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 있음.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한 4개 단체가 됩니다. 지체장애, 정박아, 또 신장장애인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마

는 4개 단체에서 신규사업들을 하다보니까 도의 내년예산에 신규사업은 일절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이 사업비가 누락된 것임.

- 양임숙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2009년행정사무감사-복지안전위원회 266회(2009.11.19.) 회의록 중에서

발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원들이나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은 장애인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나 답변을 할 때, 장애인, 장애인, 장애우 이 세 단어를 섞어가며 발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의원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장애인 지칭 용어에 대한 인식이 나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관련 발언 중에 ‘장애인’ 나 ‘장애우’ 에 대한 인식 개선을 요구하는 발언도 있었다.

먼저 아까 직속기관장의 업무보고와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용어에 대한 지적을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직속기관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장애우”라는 “벗 우(友)”자를 사용해 주신 적이 있으시고요, 황인규 국장님께서는 “장애인”라는 용어를 사용해 주셨음. “벗 우”자는 동정의 의미가 있고, 당사자가 아니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자는 “놈 자(者)”자를 표현함. 따라서 여성장애인도 있기 때문에 법적용어인 “장애인”의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를 환기시키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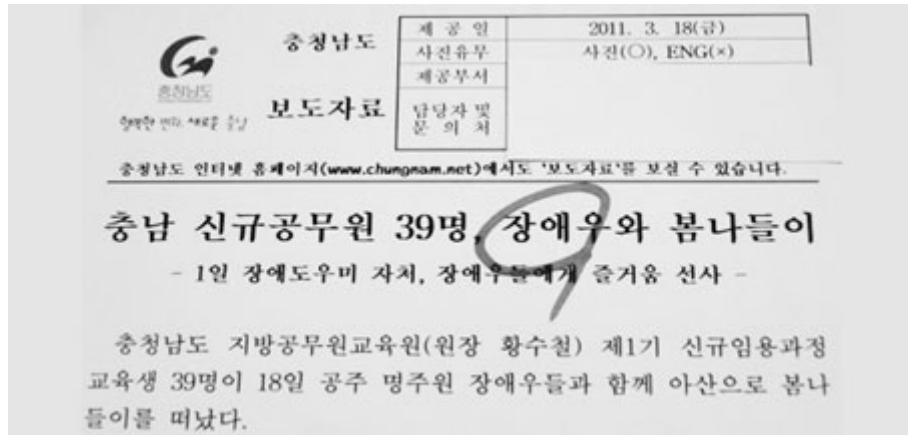
- 황화성 충청남도의원(한나라당) 충청남도의회 2006년 행정사무감사-교육 사회위원회(2006.11.21.) 회의록 중에서

동료의원들이나 집행부 담당 공무원에게 장애인 지칭용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발언이 매해 1~2건씩 나타나고 있다.

의회 뿐 아니라, 언론매체에서도 장애인 지칭용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대구지역 신문 모니터링 결과에서 ‘장애인’ 과 ‘장애우’란 말이 함께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흔히 볼 수 있는 예로, 포털 사이트에서 ‘장애우’ 검색만으로 두 달간 100여건이 넘는 기사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장애인 지칭용어를 법정 용어로 써야할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쓰지 않은 사례를

언론 보도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사진1> 2011년 3월18일 충청남도의 보도자료에 장애우라고 표기돼 있다. © C뉴스041

2. 비장애인 지칭 용어

그렇다면 의원이나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은 장애인의 상대어는 뭐라고 부를까? 이들은 장애인과 비교집단이 되는 구성원, 즉 비장애인을 일컬을 때, 대체로 '비장애인'을 쓰지만 '정상인'이나 '일반인'으로 부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민선4기 광역의회 정상인, 일반인, 비장애인 발언 건수

용어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합계
정상인	의원	6	16(1)	12	12	46
	집행부	2	2	5	2	11
	합계	8	18	17	14	57
일반인	의원	12	27	31	49	119
	집행부	2	16	20	15	53
	합계	14	43	51	64	172
비장애인	의원	23	38	44	53	158
	집행부	15	10	12	16	53
	합계	38	48	56	69	211

*()는 장애인 지칭용어 개선에 관한 발언

'비장애인'은 1차년도 38건, 2차년도 48건, 3차년도 56건, 4차년도에는 69건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은 1차년도 14건, 2차년도 43건, 3차년도 51건, 4차년도 64건으로 '비장애인'이나 '일반인'은 1차년도를 제외하고, 비슷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발언자들이 한 발언에 '장애인', '장애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장애인'과 '일반인'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상인'은 '일반인'보다 많이 쓰인 것은 아니지만 한 명의 의원이 두, 세 차례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백승호 원장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장애계 비례대표라 장애문제만 나오면 이게……. 일반인이 아니고요, 비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장애계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인이라는 용어를 썼을 경우에 마치 장애인이 특수한 집단처럼 낙인화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 이상호 서울시의원(민주당)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224회2차 (2010.08.11.)회의록 중에서

이상호 의원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정상인'이나 '일반인'이라는 말은 장애인 당사자들을 '비정상인', '특별/특수한 사람'로 표현한 것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인격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 올바른 호칭!!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는 1970년대 까지도 '병신', '불구자'로 불렸지만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자'라는 말이, 1989년 전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자'를 대체한 '장애인'이 법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1987년 어느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을 친구로 생각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장애우'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켜 장애인 지칭용어에 혼란을 가져왔다.

실제로 장애인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애우'라고 지칭하는 비장애인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이러한 경우 대다수 장애인 당사자는 그것은 틀린 단어라고 일침을 놓기도 한다.



‘장애우’란 말에는 동정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으며, 장애인이 자신을 지칭할 때 자기 자신을 “장애인의 친구”라고 말하는 모순이 되는 용어로서 장애인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기는 부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는 굳이 ‘장애자’나 ‘장애우’란 말을 쓸 필요없이 법적 용어인 ‘장애인’을 사용하면 된다.

또한 장애인의 상대어로는 ‘정상인’, ‘일반인’보다는 ‘비장애인’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정상인’이나 ‘일반인’을 ‘장애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쓸 경우에는 ‘장애인’에 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크다.

앞으로 민의를 담은 의회의 의원들과 그리고 장애인정책을 집행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장애

인 지칭용어를 바르게 사용하길 기대한다.

지역별 장애차별인조항 개정 소식 - 울산/경기

글. 김의수 / 센터 연구원

지난 4월 20일 ‘전국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이하 ‘전국연대’)가 출범하였다(관련기사, [모니터링 리포트] 2011년 2호, 5~7쪽). 전국연대가 출범할 수 있었던 것은 각 지역 추진연대가 중앙단위의 연단체 구성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현재 지역 연대는 총 5곳으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역 연대 중 장애차별인조항 개정이 활발한 울산연대와, 경기연대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겠다.

1) 울산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활동 소식

2011년 4월 18일에 결성된 울산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이하 ‘울산연대’)는 현재 추진연대 대표를 따로 두지 않고 울산장애인인권포럼(이하 ‘울산포럼’)의 성현정 대표가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울산연대의 주축이 되는 울산포럼은 올해 초 발족하여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예산과 인력 등 활동여건이 지극히 열악하지만 울산연대의 활동성과는 단연 돋보인다.

울산포럼은 울산연대가 결성되기 이전인 올해 초부터 울산광역시의 장애인정책을 홈페이지 모니터링을 통해 꾸준히 확인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울산시가 올 4월부터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사전에 파악했다. 그래서 울산연대는 울산시 자치법규 장애인차별조항 개정을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발

빠르게 움직였다. 울산연대는 4월 18일 울산시 자치법규에 포함된 장애차별인 조항 13건을 울산시 사회복지과에 제출하고, 개정을 요청하였다. 이에 울산시는 5월 13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법령 정비관련 검토의견 통보' 공문(사회복지과-10006)을 보내 2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차별조항에 대하여 울산연대의 제안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표1 참조).

울산시가 수용하지 하지 않겠다고 한 2개 조항은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과 '울산박물관 운영조례'에 포함돼 있다. 이 조항은 '의사발표의 정확성'(해당 조례 제13조 제1항 제3호)으로 '정확성'의 의미가 모호하여 뇌병변·청각장애인이 임용에서 차별받을 가능성이 커 차별조항으로 분류되었다. 울산시가 수정을 거부한 이유는 이 조항이 상위법령 위임(공무원임용시행령)에 따른 것이어서 향후 상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기 조항은 전국연대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도 (직접차별¹⁾)이라고 인정하였다. 또한 보편적 인권 측면에서 볼 때, 차별적 요소들이 있으므로, 상위법 때문에 개정을 피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나서서 법개정에 솔선수범 해야한다.

울산시가 수용하지 않은 나머지 차별조항은 '울산박물관운영조례'의 '애완동물 동반 관람 제한'(해당 조례 제7조 제4호)이다. 이 조항은 삭제대상은 아니나 시각장애인 보조견 동반을 단서 조항으로 추가하여 시각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울산시박물관은 "장애인관람시는 준비된 휠체어 4대와 자원봉사자의 도움 및 전시해설사(도슨트)를 통해 관람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의 경우는 일반 타관람자의 동물에 대한 거부감을 유발시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울산연대는 타지자체에서 동일 조항에 대한 개정 선례가 있음을 확인한 것을 바탕으로(표2 참조) 울산박물관을 설득했고, 박물관 장으로부터 정비수용을 받아냈다.

또한 울산연대는 6월 9일 장애인가정 출산 및 육아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울산연대는 장애인가정 출산 및 육아 지원과 관련하여 시책(보건위생과의

1) 한국장애인인권포럼, [2009년 장애관련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62쪽. "장애관련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소고",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인조사과 장애정책팀장

장애인출산장려금)만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조례를 제정하여 이 정책에 보다 확고한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조례제정의 의의를 밝혔다.²⁾ 특히 1회성 지원으로 그칠 게 아니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과 출산 후 육아에 대한 총체적 지원 프로그램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사업대상을 장애인 가정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장애인, 장애미혼모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울산연대는 조례안에 포함시킬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울산연대는 출산지원 조례 제정이 단지 출산을 도모하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고 여성의 자기활동(출산)이 사회적 의미가 있음을 인정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그 활동에 실질적 가치를 부여하는 인권조례임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전국연대는 울산을 시작으로 올해 지방순회토론회를 연속 개최하여 출산지원 조례 또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 조례의 제정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사진 1. 울산 출산지원조례 제정 토론회(2011.06.09. 울산시의회 대강당) 모습



2)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자치법규 검토의견 통보(출처: 울산광역시 공문 사회복지과-10006, 6쪽)

표1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자치법규 검토의견(일부 발췌)

(출처: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과-10006)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 자치법규 검토(일부)

부서명	관련 자치법규	상충조항(현행내용)	상충사유 (울산장애인조례 제개정추진연대 의견)	부서 검토 의견	향후추진 계획	비 고
기획관	울산광역시 사편찬 위원회 조례	제7조 (전문위원 및 연구원) ②전문위원과 연구원은 시장 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1년 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2. 신체-정신상의 이상 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 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차 별	수용 (삭제)	조례개정 추진	
환경 지원과	울산 광역시 환경 미화원 복무 규칙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미 화원으로 임명 또는 사역할 수 없다. 2. 신체적 불구자 및 허약자	장애인 비하표현	수용 (삭제)	수정중 (2011년 자 치법규 일 제정비계획 에 의거 개 정 추진중)	
울산 박물관	울산 박물관 운영 조례	제7조 (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할 수 없다. 2. 정 신이상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 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의거 장애인의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	수용	수용(2011 년 자치법 규 일제정 비계획에 의거 개정 추진)	

표.2 전국 자치법규 시각장애인 접근제한 간접차별 조항 개선현황(2010.11.02.현재)

자치 법규명	개정전	개정후	개정 일자	발의 자	개정사유
강원도 자연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제9조(입장제한 및 퇴장) ②휴양림현장 책임자는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 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6. 혐 오 및 유해동물 등 반한 자	제9조(입장제한 및 퇴장) ② ----- ----- ----- 6. 혐오 및 유해동 물을 동반한 자(다 만, 시각장애인의 보 조조건 동반은 예외 한다)	2010- 06-25	도지 사	휴양림의 입장제한 및 퇴장 규정 중 정신질 환자나 시각장애인이 각각 보호자나 보조조 건을 동반할 경우 예외 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완화한 것은 바람직함.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 운영조례	제10조(입장 및 관람 의 금지) 원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 및 수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5. 동물을 동 반하고 입장하는 자	제10조(입장 및 관 람의 금지)----- ----- ----- 5. 동물을 동반 하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조건 동반은 예외 로 한다.)	2010- 08-19	도지 사	「수목원 조성 및 진흥 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이 개정 됨 (’09.8.11)에 따른 입 장료 면제 대상을 정 비하며 『장애인차별금 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조항 변경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49조【관리주체의 등의 기준】① ---- 이에 대한 기준 및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3.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 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 해를 미치는 사항. 가.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 개, 고양이, 토끼, 쥐, 닭 등 가 축을 애완용으로 기 르는 행위	제49조【관리주체의 등의 기준】----- -----3. 가축(장애인 보조조건을 제외한다) 의 사육 또는 방송 시설을 사용함으로 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10-09-06 전부개 정)	2010- 09-06	-	-

(2) 경기장애인조례제 · 개정 추진연대

수도권에 속한 경기도는 기초단체수가 총31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 예산은 16개 시·도 중 중간쯤인데 지리적 위치 탓인지 항상 서울과 비교되었다. 사는 곳은 경기도지만 생계수단은 서울에 의존하기 때문에 경기도민은 서울시민들만큼이나 서울시 정책에 관심이 높다. 그만큼 경기도민은 도 정책을 서울시의 그것과 비교하는 데 익숙하다. 문제는 경기도 장애인 복지 재정이 서울시보다 열악해서 정서상 반쯤은 서울시민이나 다름없는 경기도민들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이다. -분당 같은 특수한 경우들을 제외하고- 이러한 경기도의 특징과 상대적 불리함은 곧 경기장애인조례제 · 개정 추진연대(이하 '경기연대')의 활동에도 반영된다.

현 지자체 중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경기도는 행정구역상 북부/남부로 분할돼도 무방하다는 주장도 많다. 결국 경기연대의 회원단체 구성은 타지역에 비해 어려움이 많다. 회의를 해도 이동거리 시간이 대략 2시간, 장애인특별운송수단(일명 '장콜')이 못 들어가는 지역이 태반이다(가령 성남 장애인은 성남장콜로 일산을 갈 수가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가 장애차별인조항 정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9년도부터 개정에 나섰다. 2009년 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장애인인권포럼이 발표한 “경기도내 인구 50만 거주 기초단체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발표”에서 도내 장애차별인조항이 최초로 발표했고, 경기도가 직접 나서 일제정비를 추진한 것이다.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차별조항을 개정했고, 2011년 6월 현재 35건의 차별조항 개정실적을 냈다(표3 참조). 경기도 기초지자체가 31개이므로 도내 기초단체가 1개씩은 개정한 셈이다. 이 사업은 시민사회와 정부의 거버넌스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모든 지자체가 경기도 사례를 수용해 적극적으로 장애차별인조항을 개정해 나간다면 개정 성과는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지자체의 장애인권의식과 개정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으로 경기연대는 회원단체 구성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며 경기도의 정비사업과 별개로 기초단체별 개정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최다 기초단체를 보유한 지역으로서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표3. 경기도내 기초단체 장애차별인조항 35건 개정현황 일부 발췌(2011. 06. 현재)

자치법규명	개정전	개정후	개정일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 문화재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행위의 제한) 조례 제10조 제5호에 따른 그 밖에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애완동물, 놀이기구, 운동기구, 자전거 등을 반입하는 행위	제4조(행위의 제한) 조례 제10조-----같다. 5. 애완동물, 놀이기구, 운동기구, 자전거 등을 반입하는 행위.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2010. 10.15
경기도 남양주시 의회 회의 규칙	제86조(방청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3.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제86조(방청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3. <폐지>	2011. 01.12
경기도 여주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한다. 3. 의사발표와 정확성과 논리성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 ----- 3. 의사발표의 논리성	2010. 07.08
경기도 여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제5조(사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전염병 질환자, 만취자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할 때	제5조(사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전염병 질환자, 만취자 등이 사용하고자 할 때	2010. 07.08

시설 위주의 장애인 정책은 바뀌고 있는가?

—각 지자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예산 중심으로—

글. 현근식 / 센터 연구위원

2000년도의 장애인 생활시설은 195개¹⁾였으며 2010년 현재 그 숫자는 452개로 두 배 이상 급증하였다. 이 10여년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 장애인계는 매우 많은 일들이 있어왔다. 가장 큰 변화는 사회복지 분야의 한 부류로 인식되어온 장애인 복지 정책의 주도권이 전문가 중심의 수혜 위주에서 당사자의 인권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장애인을 재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을 쟁취해나가는 주체로 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꼽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격리 또는 수용 위주의 장애인 생활시설 정책은 인권침해와 시설 장의 사유물화로 사회문제시 되었다. 또한 장애인 인권 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만나면서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당사자들의 욕구가 거세게 뿔어져 나오게 되었다. 물론 아직도 일부 전문가들 입에서 생활시설이 필요악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생활시설 위주의 정책을 뒤로 미루고 자립생활지원 정책으로 중심축을 바꾼 것처럼 보인다. 물론 겉모양만 그럴 뿐이지만.

1) 윤상용,이민경 : 지난 30년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예산 분석, 2010년, 재활복지 14호 제 2호

표 1 장애인 주거지원사업의 보건복지부 예산액 및 구성비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1981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예산액	969	7,079	18,306	39,370	58,153	16,104	31,158
구성비	68.2	52.6	61.8	68.0	40.4	11.4	4.8

※ 장애인 주거지원예산항목은 장애인생활시설운영지원,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지원, 공동생활가정지원이 포함됨. 공동생활가정지원을 제외하면 현재 정책모니터링센터의 생활시설 예산 범주와 거의 같음²⁾

문제는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정책이 복지가 필요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다. 표 1에 따르면 생활시설 예산이 2000년 기준으로 581억이며 이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예산의 40%를 달하는 편성비중이 높은 항목이었다. 하지만 2005년 생활시설 운영비 사업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이전됨에 따라 기능보강비 161억원으로 감소하고, 2010년 316억원에 그쳐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 예산의 4.8%에 불과하다고 발표하고 있다. 적어도 중앙정부의 장애인 정책은 생활시설에 주안점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방으로 가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10년 본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되어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데 그 총액이(광역+기초 순계 기준) 무려 3,696억원에 달한다. 이에 중앙정부의 국고지원 생활시설 기능보강비 316억원을 합하면 약 4,000억 정도가 생활시설 관련 예산으로 쓰인다. 여기에는 저소득 입소자의 시설급여와 그 외 입소자의 실비입소료 등은 누락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훨씬 많은 예산이 장애인 생활시설에 투입되는 것이다. 입소 장애인 1인당 예산으로 산출하면 1년에 약 2,000만원이 장애인 1인을 생활시설에 수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 것이다.

2) 윤상용,이민경 : 표 및 주석 출처 - 前掲書

표 2. 광역+기초지자체 생활시설 운영 예산

(단위 : 천원)

광역	광역시도 생활시설예산	기초지자체 부담액	광역+기초 생활시설예산	생활시설 입소자(명)
서울	64,268,952	0	64,268,952	3,269
부산	23,860,279	0	23,860,279	1,354
대구	25,393,712	0	25,393,712	1,422
인천	18,443,976	0	18,443,976	719
광주	11,693,358	0	11,693,358	712
대전	12,944,523	0	12,944,523	789
울산	8,796,806	0	8,796,806	472
경기	32,499,527	17,300,668	49,800,195	3,987
강원	9,057,078	7,936,094	16,993,172	924
충북	14,793,720	7,314,072	22,107,792	1,665
충남	17,089,519	5,766,226	22,855,745	1,482
전북	16,509,762	4,192,332	20,702,094	1,396
전남	9,905,317	2,380,235	12,285,552	782
경북	18,816,123	10,246,670	29,062,793	1,582
경남	17,533,758	6,262,187	23,795,945	1,295
제주	6,563,754 ³⁾	0	6,563,754	401
합계	308,170,164	61,398,484	369,568,648	22,251

기준 : 예산액은 2010년 본(당초)예산 기준, 입소자 수는 2009년 보건복지부 통계 기준 임⁴⁾

중앙정부의 장애인 생활시설 예산이 줄어들어 생활시설 중심의 정책이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보이는 것은 착시 현상이라는 것이고 그 이유는 지방이양 정책 및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활시설 운영을 지자체에 맡겨버리고 자원부담을 지방재정에서 대부분 충당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 결과 10년 만에 생활 시설수와 입소자는 2배

3) 기존 발표한 자료에는 제주도 생활시설예산이 빠져 있었으나 지자체의 정보공개로 통계치를 수정하였다
4) 현근식 : 2010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예산 분석 토론회 자료집, 2011년,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이상 많아졌고 결론적으로 생활시설 예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측된다.

보다 큰 문제는 지자체 공무원들과 지역 복지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이를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지역 주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마저 다시 고착해버리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아직도 지역에서 몸을 가눌 수 없는 지체장애인과 가족들이 관리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은 시설에 격리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의 산업화 시대에 가족이 담당했던 장애인의 보호와 관리를 생활시설에 맡겨 효율화 시키되 장애인 개개인의 삶의 질과 인권은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편의적인 생각이 아직도 사회적 인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사회적 인식의 영향을 받은 시설 정책이 각 지자체에 엄연히 중심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차후 지방자치에도 상당한 역효과를 가져올 확률이 크다. 현재 각 지자체는 생활시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지역재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을 늘려 장애인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장애인 예산의 40%이상을 시설 예산으로 편성하는 곳도 여러군데 발견할 수 있다. 시설 위주의 정책은 지방재정을 경직성 예산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게 만들어 자칫 지방재정을 돌이킬 수 없이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국회예산처에서 발표한 「2011년도 예산안 종합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대응 지방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중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과 같이 사업의 범위와 규모가 커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높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수용시설에 대한



운영 사업비 부담이 거의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사업 유지에 필요한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만이 발생될 뿐이다. 그 결과,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복지 정책의 예산 편성이 적절히 되지 못하여 지자체 장애인들이 원하는 사회참여 및 당당한 삶의 주체로서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놓고 있다. 최소한의 장애인 복지 시설 인프라를 구축했다면 시설에 예산 편중 비율을 높힐 것이 아니라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해외에서도 탈시설화 논쟁이 촉발된 지점은 생활시설 운영 비용 때문이었다. 특히 미국에서 탈시설 운동이 사회적인 호응을 얻은 것은 장애인들의 대규모로 격리 수용한 대형생활시설 운영을 위한 비용보다도 지역사회에 장애인들의 통합하여 살게하는 것이 매우 경제적인 것이라는 논리 때문이었다⁵⁾. 실제로 정신장애인의 경우 생활시설에 수용하는 것보다 지역의 정신보건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평상시에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게하는 편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비용의 측면에서만 생활시설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 절감 문제가 생활시설의 확대를 막고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하는 현실적인 논리이지만 그 보다 먼저 전제되어야 할 점은 탈시설화를 중증장애인의 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즉 현재 지자체에서 떠맡아 확대시키고 있는 생활시설 정책은 인권의 측면에서 본다면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누려야 할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 즉 개인의 자유, 민주적 절차, 자기결정권이 중요시되는 현대 사회에 중증 장애라는 이유로 시설로의 격리 및 요보호를 위해 생활시설에 수용하자는 논리는 인권 침해적이고 권력적인 주장일 수밖에 없다. 어쨌든 생활시설에서 보호받는 장애인은 사회복지서비스에 의해 보호받는 객체이고 대상일 수밖에 없어 주체적 삶을 살기에는 한계가 있다.⁶⁾

5) Gerben DeJong은 논문 『Independent Living : From Social Movement to Analytic Paradigm』에서 미국의 장애인자립생활 운동이 처음부터 탈시설화를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논리적 근거를 장애인을 수용하는 대형시설의 운영보다는 지역 사회의 자립 생활을 영위케 하는 것이 비용면에 절감된다는 점을 채택했다고 보았다, 자립생활 운동사에서 이 점은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게됐지만 초기 자립생활 운동을 시민들에게 설득시키는 좋은 근거가 되었다.
6) 서인환: <장애인 탈시설 정책과 운동 전략>, 『장애인 자립생활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운동 지역세미나 자료집』, 2011, 한국D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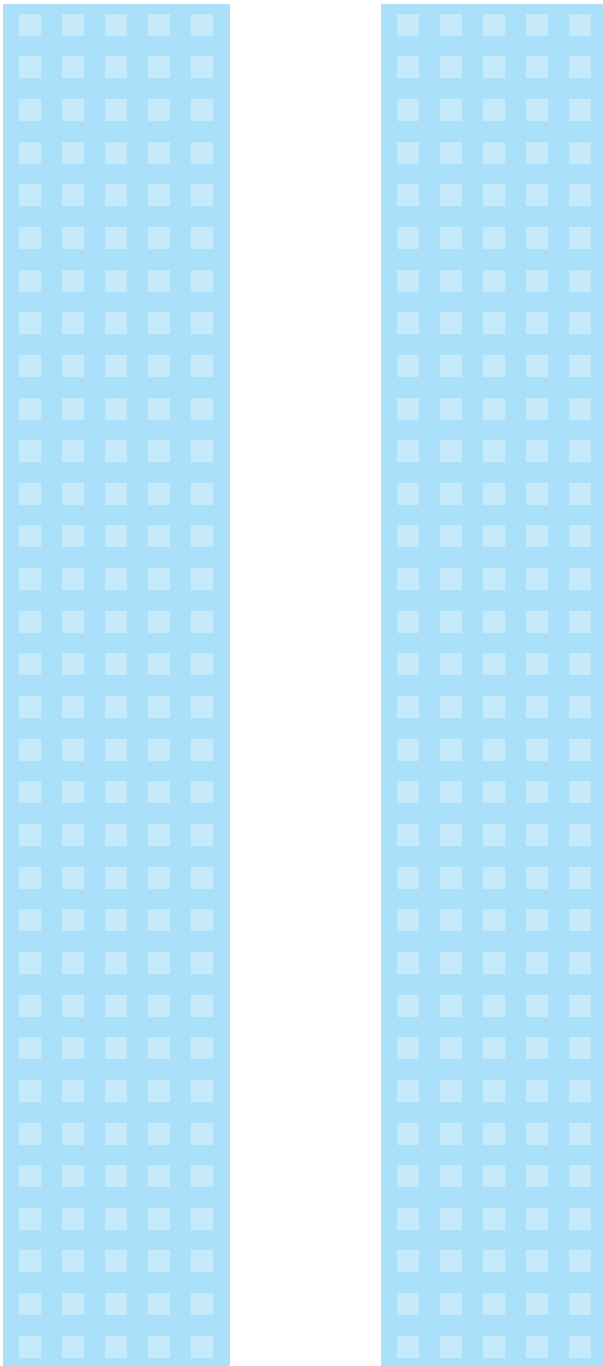


표 3. 서울시 생활시설 장애인의 퇴소 욕구 조사 결과(서울시정개발원, 2008)
(출처 : 김정하, 장애인인권운동의 새로운 동향, 2010년에서 재인용)

		퇴소희망	주거 제공시 퇴소 욕구	퇴소의지	주거 및 서비스 지원시 퇴소희망
무료 이용자	응답 사례수	(964)	(963)	(959)	(265)
	있지않다 응답불가/거부	56,328,814.8	53,629,417.0	43,634,122.3	69,415,814.7
전체 이용자	응답 사례수	(1073)	(1071)	(1067)	(290)
	있지않다 응답불가/거부	57,028,914.1	54,229,516.3	44,134,121.7	70,316,213.4

표 3은 서울시정개발원에서 2008년 서울시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시설 장애인의 70%가 주거 및 제반 서비스가 갖춰지면 탈시설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잘 나타나 있다.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은 생활시설에 장애인을 어떻게 수용하기를 강구할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사회적 장벽을 어떻게 제거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먼저이다. 각 지역의 구성원들은 그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여야 한다.

경부고속도로 휴게소 장애인 화장실 모니터링

글. 강민수 / 센터 연구원

화장실의 의미

예전에 화장실은 음습하고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다. 우리 속담에 ‘뒷간과 처갓집은 멀수록 좋다’는 말이 있다. 뒷간이 가까우면 냄새가 나고 처갓집이 가까우면 말썽이 생기기 쉽다는 것이다. 화장실은 더러움이나 기피, 혐오를 상징하는 대상이었다. 우리의 화장실 문화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창덕궁에 소장되어 있는 ‘매화틀’이란 문화재가 있다. ‘매화’는 왕의 변을 이르는 말이고, ‘매화틀’은 임금이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던 이동식 변기이다. 형태는 오늘날의 의자식으로 어린 아기의 좌변기와 비슷하게 생겼다. 배설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근원적인 행위 중에 하나이다. 임금이 인간이기 때문에 배설을 한다. 하지만 왕궁은 신성한 곳이라 여겨져 화장실이 없었다. 임금이 생리적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매화틀’ 활용하는 것이었다. 화장실의 명칭도 시대와 지역에 따라 통시, 칩간, 뒷간, 정랑, 복수간, 변소, 해우소 등으로 불렸다. 이러한 말들은 서구식 주택 문화가 도입되면서 점잖게 부르는 화장실이란 명칭으로 진화하면서 대부분 쓰이지 않게 되었지만 오늘날에도 해우소라는 명칭만은 사찰에 있는 화장실에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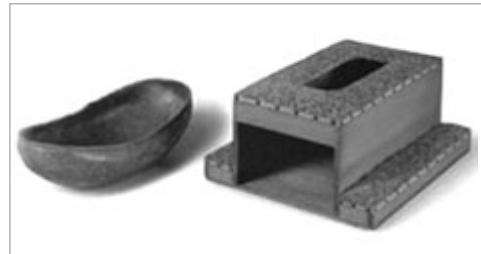


그림 1 조선시대 왕의 좌식변기 ‘매화틀’

화장실이 기능면에서 변화하고 있다. 생리적인 욕구만 충족 시켜주는 공간에서 휴식 공간, 문화 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화장실 내부가 청결하고, 쾌적하며, 향기로운 냄새로 상쾌한 기분까지 들게 한다. 최근에는 화장실이 생활공간으로 인식되어 화장실 내부에 액자를 걸어 놓거나 음악을 틀어 화장실 분위기를 카페나 전시장처럼 가꾸어 놓기도 한다. 또한 식물을 이용하여 간이 조경을 설치한 곳도 있다. 이처럼 화장실은 휴식 공간과 다양한 볼거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공중이용시설에는 편의증진법¹⁾에 따라 장애인등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이 설치되었다. 하지만 편의증진법의 잘못된 적용으로 대부분 장애인 화장실로 표기되어 있어 장애인만 사용하고 있다. 편의증진법에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화장실을 말하고 있으나, 설치된 화장실은 장애인만을 위한 공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설치하는 주체와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만을 위한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생각과 추가로 설치하는 데 따른 비용부담, 그리고 적은 이용 빈도를 핑계로 유지와 관리를 소홀히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이용자를 위하여 공공화장실을 구비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이다. 편의증진법에 따라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인등’을 위한 화장실이 일상적인 공간에서 독립·분리되어 있거나, 장애인등의 지나친 강제로 보편적 편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화장실을 ‘장애인만을 위한’ 장소로 오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경부고속도로 휴게소의 장애인등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조사를 통하여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설치현황을 파악해보고, 더 나아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화장실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화장실의 종류와 조건, 다목적화장실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경부고속도로 휴게소의 장애인등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현장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결론과 제언으로 글을 진행한다.

화장실의 종류와 조건

화장실은 크게 개인용과 공중화장실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용 화장실은 주택의 욕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실이나 객실의 욕실의 사적인 화장실 공간이며, 공중화장실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다수의 이용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분류·정의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공중화장실 -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 나. 개인화장실 -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중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화장실
 - 다. 이동화장실 - 다중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
 - 라. 간이화장실 -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
 - 마. 유료화장실 -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
- 공중화장실은 기본적으로 환경성, 편리성, 쾌적성, 안정성, 유지관리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중에서 편리성은 다목적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데 장애인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이용하기 쉬운 기능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고 다목적 기능을 갖춘 이용자 편에서 계획을 해야 한다. 공중화장실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공중화장실이 갖추어야 할 조건²⁾

일반요소	기능적 요소	계획적 요소
환경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는 물론 리드할 수 있을 것	시가지 가꾸기의 중요한 포인트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이용자 면에서 계획
편리성	신체 장애인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이용하기 쉬울 것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위치 설치 다목적 기능을 갖추고 이용자편에서 계획
쾌적성	청결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공간적 풍부함의 연구와 연출 방법을 고려한 레이아웃
안정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의 연구 방법을 고려한 레이아웃
유지관리	내구성이 있고 유지하기 쉬울 것	내구성, 경제성이 있는 위생기구, 청소 등의 유지관리가 용이할 것

2) 한국화장실 문화협회 & 일본 토아레(Toilet)협회, 제1한·일 화장실 포럼 2000, p44

화장실은 공간구성에 따라 기본 생리적 해결을 위한 공간, 부가적 기능 공간, 도시 기능 장치로서의 문화적 공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생리적 해결을 위한 공간은 화장실 본래의 기능으로써 인간의 기본적 생리욕구를 위해 필요한 기본요소이다. 여기에는 여성용 대변기(소변기), 남성용 대변기, 남성용 소변기, 장애인용 대·소변기, 세면대 등이 있고, 각 구성요소 간의 배치방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다.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통로 확보와 동선의 배치는 매우 중요하다.

부가적 기능 공간은 진입을 위한 전이공간, 파우더 룸, 어린이용 대·소변기, 베이비시트 등으로 구성되었다. 여성의 경우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거나 옷을 고쳐 입을 경우, 아이를 동반한 이용자의 경우에 필요한 공간이다. 도시 기능 장치로서의 문화적 공간은 휴식 공간, 만남의 공간, 자판기 코너, 매점, Waiting Area 등의 공익 시설과 접목시킨 부분이다.

또한 화장실은 설치주제별, 설치형태별, 설치위치별, 설치기능별로도 나누어 볼 수 있다. 설치기능면에서 보면, 일반화장실과 다목적화장실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일반화장실은 일반적인 대·소변의 용무를 위한 화장실이고, 다목적화장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다양한 상태의 이용자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휴게용의자, 어린이용 세면기, 기저귀교환대 등을 갖추어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공간이다.

장애인 화장실에서 다목적 화장실로

화장실이 냄새나고 더러워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기존의 시설이 아니라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화장실이 필요에 의해 형식적으로 만들어지고 관리가 소홀해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공간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지역의 특징을 살린 하나의 문화 공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화장실의 명칭도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 화장실을 다목적화장실로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다목적화장실에 대한 정의나 명확한 규정은 아직까지 없다. 필요에 따라서 여성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을 다목적화장실로 명명하기도 하고, 장애인 화장실을 다목적화장실과 동일하게 간주하기도 한다.

한국화장실협회에서는 다목적화장실을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큰짐을 든 사람, 옷을 갈아입고 싶은 사람 등 다양한 상태의 이용자를 위한 화장실로 일반 화장실의 사용이 불편한 사람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화장실로 정의하고 있다. '편의증진법'에서는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

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여성행복(女幸)프로젝트에서 여행(女幸)화장실 인증 기준에서는 다목적화장실을 다양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간이의자, 기저귀 교환대, 성인용변기, 어린이용변기, 간이세면대, 핸드레일과 선반 등의 편의시설이 있어야 한다.

서울시 여성행복프로젝트에서 펼치고 있는 여행(女幸) 화장실 인증 사업에 제시된 내용과 한국화장실협회의 정의는 편의증진법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기준과 유사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다목적화장실은 누구나 접근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거기에는 장애인용 대·소변기, 영유아용 거치대, 기저귀 교환대, 간이의자, 세면대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법률의 잘못된 해석과 적용으로 장애인 전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화장실 입구의 표지판도 '장애인전용 화장실'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등의 여러 가지로 표기되어 있다. 심지어 '장애인 이의는 사용금지'라는 문구까지 부착된 곳도 있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에 대한 안내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혼란이 있는 것이다.



그림 2. 다목적화장실 픽토그램
(행정안전부와 한국화장실협회가 연구·개발)



그림 3. 고속도로 휴게소 장애인화장실 표지판

편의증진법상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명칭을 다목적화장실로 용어를 변경하면 어떨까? 법에서 다목적화장실에 대한 정의와 설비기준을 규정하고 표준화된 픽토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면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화장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니터링 결과

이번 조사는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의 장애인 화장실 33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기간은 2011년 5월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되었고,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모니터 단원이 대상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장애인 화장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장애인 화장실의 표지판(픽토그램)은 어떤가? 그리고 도움벨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를 알아보았다.

지금까지의 조사는 장애인 화장실에 편의시설이 알맞게 설치되어 있는가를 점검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번조사에서는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의 적합성 여부는 조사하지 않았다. 편의시설하면 장애인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조사하는 것으로 오해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조사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화장실로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에 중점을 두지 않았다. 이번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화장실 설치 유형

경부고속도로 휴게소의 장애인 화장실은 <표 2>와 같이 100%(33개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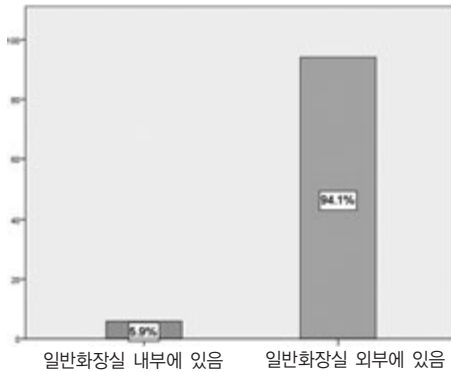
<표 2> 장애인 화장실 설치여부

구분	빈도	퍼센트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가?	예	33	100.0
	아니오	0	0.0
	합계	33	100.0

장애인 화장실의 위치는 <표 3>과 같이 일반화장실 내부가 96.9%(32개소), 일반화장실 외부 3.1%(1개소)로 나타났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여기서 일반화장실 내부는 같은 건물의 같은 공간을 의미하고, 일반화장실 외부는 다른 건물이나 별도의 장소를 말한다.

〈표 3〉 장애인 화장실 위치

구분		빈도	퍼센트
장애인 화장실이 어떠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가?	일반화장실 내부	31	96.9
	일반화장실 외부	1	3.1
	합계	3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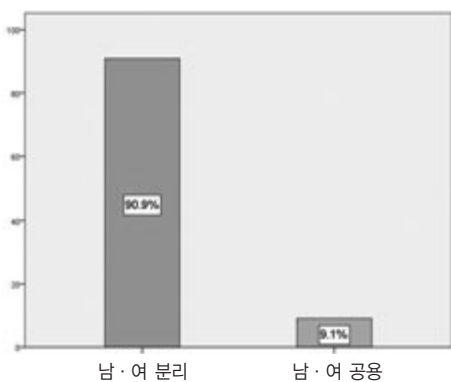


〈그림 4〉 장애인 화장실 위치

장애인 화장실의 남·녀분리 여부는 〈표 4〉와 같이 남·녀 분리가 90.9%(30개소), 남·녀 공용이 9.1%(3개소)로 조사되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5〉와 같다. 이번 조사로 장애인 화장실의 남·녀가 따로 사용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지만, 아직도 남·녀가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장애인 화장실의 남·녀 분리 여부

구분		빈도	퍼센트
장애인 화장실의 남·녀가 분리되어 있는가?	남·여 분리	30	90.9
	남·여 공용	3	9.1
	합계	3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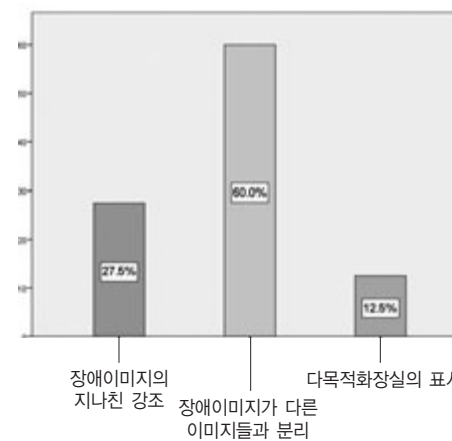
〈그림 5〉 장애인 화장실의 남·녀 분리 여부

2. 장애인 화장실 표지판(픽토그램)

장애인 화장실 표지판 형태는 전체 33개소 중에서 중복으로 응답한 결과 장애인 이미지의 지나친 강조가 27.5%(11개소), 장애인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들과 분리가 60.0%(24개소), 다목적화장실이 12.5%(5개소)로 순으로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6〉과 같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 화장실 표지판에 대하여 법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표지판이 부착된 것 같다.

〈표 5〉 장애인 화장실 표지판

구분		빈도	퍼센트
장애인 표지판(픽토그램)의 형태는?	장애인 이미지의 지나친 강조	11	27.5
	장애인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들과 분리	24	60.0
	다목적화장실의 표시	5	12.5
	남·녀 구분만 표시	0	0.0
	합계	40	100.0



〈그림 6〉 장애인 화장실 표지판

3. 장애인 화장실의 편의관련

장애인 화장실의 편의와 관련해서 장애인 화장실의 주출입문 형태는 〈표 6〉과 같이 조사대상 100%(33개소)가 자동문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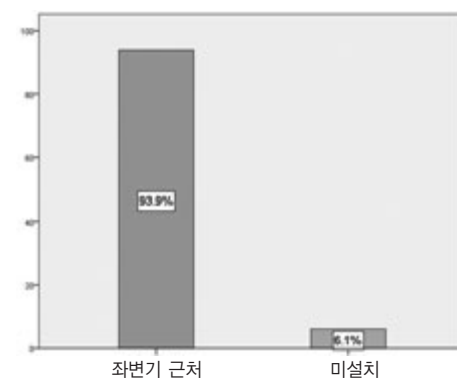
〈표 6〉장애인 화장실 출입문 형태

구분		빈도	퍼센트
장애인 화장실 주출입문의 형태는?	자동	33	100.0
	수동	0	0.0
	합계	33	100.0

장애인 화장실 도움벨의 위치는 〈표 7〉과 같이 좌변기 근처가 93.9%(31 개소)이고 미설치가 6.1%(2 개소)로 조사되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7〉과 같다.

〈표 7〉장애인 화장실 도움벨의 위치

구분		빈도	퍼센트
장애인 화장실 내 도움벨의 위치는?	좌변기 근처	31	93.9
	소변기 근처	0	0
	세면대 근처	0	0
	미설치	2	6.1
	기타	0	0
	합계	33	100.0



〈그림 7〉 장애인 화장실 도움벨의 위치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조사결과를 볼 때, 경부고속도로 상행선과 하행선 휴게소의 장애인 화장실은 33개소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장애인 화장실의 양적 확대

는 장애인당사들과 관련 기관의 노력, 그리고 편의증진법의 시행으로 많은 진전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편의증진법의 설치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한다. 2008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결과를 보면, 공중화장실 세면대의 설치율은 73.3% 이지만 적정설치율은 31.9%로 나타났다. 이는 설치되는 되어 있으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불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장실 내부의 청결 유지나 화장실이 고장나서 사용할 수 없는 문제, 편의시설이 설치되었지만 이용할 수 없는 문제, 화장실 내부에 여러 가지 물건을 보관하는 등의 화장실 관리와 유지의 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장애인 전용 화장실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화장실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장애인만 사용하는 장애인전용 화장실에서 장애인도 사용하고 유아를 동반한 사람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화장실로 변경하는 것이다. 장애인만 사용한다면 사회적 거부감도 있고, 인식도 좋지 않다.

현재의 장애인만을 위한 화장실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화장실로 활용한다면 경제적 효과도 있을 것이다. 기존의 장애인 화장실에 몇 가지 설비만 보완하면 되기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설치하는 비용 부담도 없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환경과 상황에 맞게 변했다. 뒷간에서 변소로, 변소에서 화장실로 변했듯이 장애인 화장실에서 다목적 화장실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장애인만 사용하는 화장실에서 장애인도 사용하는 화장실로 거듭나야 한다.

“죽음은 삶의 끝이지, 관계의 끝이 아니야!”

–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을 읽고

글. 이기영 / 도봉노적성장애인지원센터 팀장



미치 앨봄 지음 / 세종서적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은 저자 미치 앨봄이 ‘루게릭병’으로 죽음을 앞둔 은사 모리 슈워츠 교수와 함께한 열 네 번의 ‘인생수업’ 이야기다. 이 둘은 화요일 마다 만나 삶과 죽음의 의미를 논한다. 우리가 ‘성공(부와 명예)’이란 꿈을 좇느라 망각하고 있는 사랑, 가족, 영혼, 죽음의 의미까지, 두 사람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성찰해 나간다. 모리에게 “죽음은 삶의 끝이지, 관계의 끝이 아니다.” 나아가 ‘죽어간다’는 말은 ‘쓸모없다’는 말과 동의어가 아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어가서 나는 죽는다. 그리고 다음날 잠에서 깨어날 때 나는 새롭게 태어난다.”

‘난 영혼의 결핍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거나, 혹은 갇힌 ‘죽음의 기술’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은 분명 훌륭한 인생 교과서가 될 것이다. 5~6년 전 이 책을 처음 접했던 나 역시 이들의 수업을 통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되돌아 본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이 책을 다시 펼쳤을 때 처음과 달리 인생의 참된 의미뿐 아니라 이른바 ‘루게릭병’에 걸려 장애인 된 ‘모리’ 교수의 삶을 더 집중해서 엿보게 되었다.

이 책은 ‘장애’를 주제로 한 책이 아니기에 장애인이 된 뒤 ‘모리 교수’의 모습과 감정은 그리 구체적으로 묘사 되어 있진 않다. 하지만 짧게나마 서술된 장애인으로서의 모습과 말을 통해 ‘장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또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현재 지니고 있을, 또는 미래에 접하게 될) ‘장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전해준다.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병원 밖을 나온 모리는 나락 속으로 추락하는 기분을 느낀다. 하루하루 병은 그의 삶을 점점 더 압박해왔다.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게 되고, 수영을 할 때 혼자서 옷을 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수영복을 갈아입을 때 사람들이 그를 힐끗힐끗 쳐다본다. 그것으로 그의 ‘프라이버시’는 끝장 나버렸다.

차츰 병이 깊어져 결국 그는 휠체어에 앉아 지내고 견지도 못한다. 음식물 씹는 것조차 힘겨운 일이다. 영혼마저 무기력한 몸속에 갇혀 버린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인정”하고, “과거를 부인하거나 버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너무 늦어서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자”고 삶을 긍정한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부러울 때는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도록 놔둔다. 그 다음 “그건 부러운 마음이야. 이젠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야겠다”며 스스로를 다잡는다. 그는 이렇게 “벗어나기”를 통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버린다. 소변을 볼 때면 종종 친구나 지인들에게 도움(활동보조)을 요청하는데, 이 상황에서 정작 그는 아무렇지 않은데 주변 사람들이 더 놀라워한다.

모리는 “스스로 제대로 된 문화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그것을 굳이 따르려고 애쓰지 말라”고 충고한다. 물론 이 말은 사회의 규칙을 모두 다 무시하라는 건 아니다. 문화로부터 벗어나라고 말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문화에서 해방되라는 말이다. 우리의 문화는 남들보다 더 좋은 자동차, 명품 가방들을 추구하도록 만들지만 모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라고 일러준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지 등과 같이 커다란 줄기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른 사람이나 사회가 우리 대신 그런 것을 결정하게 내버려 둘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지금 자신이 속한 사회, 상황 속에서 자신만의 문화를 창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선전하는 무의미한 것들에 매달리는 대신 자신만의 문화를 만들어 가라고 말한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은 출판 되자마자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죽기 전에 꼭 읽어봐야 할 책’ 목록에 빠지지 않는다. 모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관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멘토이자 동료상담가가 되었다.



저자 미치 앨봄과 그의 대학 은사 모리 슈워츠 교수

유아살해 풍습

- 영화 <배트맨 리턴즈>

글. 김의수 / 센터 연구원



영화 <배트맨 리턴즈>의 펭귄맨

고대 사회는 생산력이 매우 낮았다. 그래서 생산물과 노동력 수탈을 위해 이웃 국가/부족과 전쟁을 일삼던 사회였다. 이런 사회에서는 전쟁과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건장한 신체를 가진 남자'가 가치 있는 인간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 특히, 고대 그리스·로마에서 두드러졌다. 게다가 그리스인들은 사후 세계를 믿지 않았던 탓에, 문화적으로 보면 오로지 현실의 안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런 경향으로 그리스인들은 아름다운 육체와 정신의 완전함을 중시하여 철학 예술 등, 문화 전반에 기하학에 기초한 육체와 정신의 완전성을 추구하는 사유방식을 체계화했다. 예컨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의 신체와 건축물(가령 파르테논 신전)에 수학적 황금비율을 적용하여 완벽한 비례를 추구했다. 또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가변적인 현상 배후에는 불변하는 형상(이데아)이 존재하는데 그 불변의 조건은 수학(기하학)적으로 완결된 구조를 갖춘데서 비롯된다고 한다.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이런 사고방식을 통해 그리스인들은 장애인, 설령 그가 혈통 좋은 그리스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사회에서는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신체나 정신에 '결함'이 있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제거당했다. 즉 성인이 되어서 전쟁이나 운동 경기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나 정신에 손상이 있다고 판정되면 죽도록 내버려 두거나 들판에 내다 버리는 풍습이 있었다. 그런 아이는 키워봤자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식충이'가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후대의 역사학자들은 이런 풍습을 '유아살해(infanticide)'라 불렀다.

영화 <배트맨 리턴즈>(1992년)에도 흉측한 모습으로 태어난 장애 아기를(즉 결함을 갖고 태어난 아기를) 하수구에 내다버리는 설정이 나온다. 아이는 자라서 펭귄 모습을 한 악당(펭귄맨)이 되어 사람들을 괴롭힌다. 펭귄맨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어머니와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상처 때문에 사회를 증오하는, 말하자면 광기어린 편집증 장애인이 된 것이다. 이처럼 고대사회의 유아살해 풍습이 오늘날 대중문화의 모티브가 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바로 고대 악습의 재현 가능성이다. 애석하게도 현실은 영화를 닮아 있다. 전국의 지방 자치단체 자치법규에는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만한 결함이 있는 자"의 입장을 제한하는 조항들이 다수 등장한다(아래 표 참조).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이유는 결함이고 그 결함은 존재 자체의 결함이다. 존재 자체의 결함은 곧 당사자의 신체적 결함을 의미한다. 결국 결함은 장애를 의미한다. 이 조문들은 모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차별 조항으로 정비대상이다.

<장애를 결함으로 간주하여 공공기관 입장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차별조항들(일부 발췌)>

조례명	차별조항	비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등질환이 있는 자	존치중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제5조(입장제한 등) ②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입장할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명할 수 있다. 1. 타인에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성질환이 있는 자	2011.03.11 해당 조항 정비(삭제)
전라북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4조(입장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수 있다. 1. 타인이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질환이 있는 자	2011.02.18. 해당 조항 정비(삭제)

작년 5월 생후 2개월된 장애유아를 살해한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장애를 지닌 딸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생명을 빼앗았지만, 자수했고 남편 등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현실이다.

장애 이슈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장애인 당사자(이동수 소장, 구로장애인자립센터) 참여

구로구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구청장은 물론 구로구 주민, 풀뿌리 시민단체, 구의회 의원들 까지 모두 시민자치의 첫걸음이며 핵심인 예산 편성에 주민이 참여하는 과정을 차곡차곡 밟아나가고 있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란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市에서 시작된 지역 시민자치의 방법으로서 지자체의 예산 편성 일부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제안하고 단체장이 이를 적극 반영하는 제도이다. 즉 예산편성의 제안과 우선순위를 주민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시민자치와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2011년 5월 기준으로 전국 244개 지자체 중 114개소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했고, 작년 6.2 지방선거 이후 많은 단체장들과 지역 주민이 이 제도를 실효성있게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본 센터와 연대하여 구로구 장애인 예산분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구로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이동수 소장이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는 장애인의 정책참여라는 본 센터의 목적을 실제로 적용시킨 적절한 예이다. 장애인 당사자로 주민참여예산제에 최초로 참여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라는 점에서 모범적이라 할 수 있다.

고만규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장애차별인적 조항 조항 일부 개정 추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고만규 서울시의원(비례대표, 한나라당)은 장애차별인적 조항 조항 일부개정안을 발의 하였다. 전국 장애차별인적 조항 총 115건 중 서울특별시의 장애차별인적 조항 조항은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4건이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개정안이 제231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서울특별시 서울역사 박물관 운영조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조례」개정안은 제232회 임시회에서 개정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은 서울시에서 올 하반기까지 개정하기로 하였다. 고만규의원실은 장애차별인적 조항이 개정됨으로써 장애인을 소외시키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와 장애인의 평등권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안 의결 서울시 중구의회, 市 25개 자치구 최초 제정

서울 중구 지역 내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받고, 자립생활을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중구의회(의장 김수안)는 1일 열린 제189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해경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중구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제정된 것으로 중구청 및 산하기관을 우선구매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중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해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 해야 하는 중구청장의 책무, 공공기관의 범위, 구매계획수립,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중구 내 장애인 인구는 중구 전체 인구(13만2000여명)의 5%를 차지하는 약 6400여명이다. (「시민일보」 기사 인용)

부산시 사상구 장애가정에 출산지원금 100만원 지급

부산 사상구 지역 장애인가정이 출산할 경우 오는 7월부터 최대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 받게 됐다. 이는 서복현 사상구의원(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22일 ‘제1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 가정이다. 지원금은 신생아 부모의 장애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1~3급은 100만원 이내, 4급~6급은 50만원이내. 하지만 부모 모두가 장애인 경우에 중복해 지급되지 않고, 소득수준 등에 따라 장애등급이 같아도 차등 지급될 수 있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오는 7월 1일 이후 출생한 가정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 부산지역 30여개 장애인·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장애인조례 제·개정 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서울 중구,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남양주시, 파주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완주군 등이 있다. 하지만 ‘장애인 아버지가 있는 장애인 가정’에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은 인천시 부평구, 경기 안산시, 의왕시, 전북 군산시, 부산 사상구 등 단 5곳에 불과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부산지역 광역·기초의원 및 관련 지자체와 실질적인 장애조례 제·개정을 위해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의 운동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에이블 뉴스」 기사 인용)

대전시 중구 중구의회, 장애인가정 출산시 최대 100만원 지원

올 10월부터 대전 중구 관내 장애인 가정은 출산 때 최대 100만원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전 중구의회는 5월 2일 제15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김택우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가결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대전 5개구 중 처음 선보이는 이 조례는 오는 5월 13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상정, 심의·의결되면 공포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발효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경우 출산 때 출산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수급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 가정으로 오는 10월부터 출산한 자에 한한다.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 1~2급은 100만원, 3~4급은 70만원, 5~6급은 3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며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지원액의 50%를 가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김택우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안을 제출했다"며 "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에 추가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뉴시스」 기사 인용)

전라북도의회, '장애인가족지원조례' 통과 2011.06.20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매년 수립, 지원센터 설치 등 규정/담당 부서 의견 수렴 · 간담회 거쳐 20일 본회의 통과

전라북도의회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한 '장애인가족지원조례'를 6월 20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전라북도 도지사가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가족 인식개선 △돌봄 사업 △휴식 지원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상담지원 사업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진호 의원은 "장애인 가족들은 필요한 정보 및 서비스를 얻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기관 간의 협력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서 "장애인 가족은 반복적인 서비스를 받거나 시기적절한 정보 및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라고 밝혔다. (「비마이너」 기사 인용)

대전시의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제도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한영희 의원은 6월 2일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제도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한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을 막고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장애인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은 여전하고 장애인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더욱더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한 의원은 오늘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의 존엄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경준 중부대학교 노인·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식교육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별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전담인력 배치 △교육수행기관의 지정과 인권교육 참여의무화 △지역기업들에 대한 인권기반 장애인식교육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연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장은 "장애인콜택시 운영방법의 하나인 개인택시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임차택시제도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장애인콜택시 운영방법을 조속히 개선해야한다"고 피력했다. (「대전 투데이」 기사 인용)



인터넷에 장애인 ·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날개를 달자 !!

생명체와 같이 변화하는 정보(웹)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주된 장애인 기술 인력으로 구성된 표준 및 접근성 진단·컨설팅 전문그룹이며, 정보통신기술(ICT) 컨설팅분야 최초의 사회적기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ICT)컨설팅분야 최초 사회적기업

● ● ● 웹 표준 · 웹 접근성 진단컨설팅

웹 접근성 사전진단, 사후검수진단, 감수, 감리자문 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사용자성 진단평가로 장애인 당사자 사용편의성 점검



● ● ● 웹 모니터링 서비스(Web Monitoring Service)

웹 표준화 및 웹 접근성 개선 사업 이후 웹 접근성 품질유지 관리 서비스 제공



● ● ● 웹 접근성(WA) 인증

웹 접근성 사전진단, 사후검수진단, 감수, 감리자문 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 및 장애인 사용자성 진단 평가 실시



T.(02)2678-0078
E-mail. webwatch@hanmail.net

